

제81차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 의결사항

심의일자 : 2018.7.25(서면심의)

□ 안건명 : 「시흥5동 복합청사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심의

위 안건에 대한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 별첨 위원별 심의 의견을 보완하는 것으로 『조건부 채택』 의결함.

【 주요 심의내용 】

- BF생활환경 예비인증 등급 표기가 누락되었으니 보완할 것
- 주민편의(체력단련) + 민원(동 업무) 등 + 자치회관의 복합화 대안제시 및 주변환경과의 연계방안을 제시할 것.
- 일요일 및 근무시간외 청사 개방확대를 고려한 구체적인 보안 및 관리방안을 수립할 것.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적용과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본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시설별 접근성 향상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도 함께 고려 할 것.
- 안내표지시설의 건축물 내부 및 실명 안내사인물 계획을 추가할 것
- 장애인주차장은 주차 이후에 차로를 횡단하지 않고, 안전하게 장애인 EV에 접근할 수 있는 보행안전통로를 확보 할 것.
- 서울시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할 것
- 유지관리 부서와 발주부서, 설계자는 설계단계부터 준공시까지 T/F팀을 구성 · 운영하여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하도록 할 것.

첨부 : 위원별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각 1부. 끝.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 안전명 : 「시흥5동 복합청사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심의

분야	채 택 의 견	비 고
건축 계획	<p style="text-align: center;">《설계공모지침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2개요 추가용역의 BF생활환경 예비인증 등급 표기가 누락되었으니 보완 요(과업내용서에도 누락되어 있으니 동일 수정) 2. 1.2개요 추가용역의 지질조사비 3공에 시추공규격(NX) 표기 요(과업내용서에도 누락되어 있으니 동일 수정) 3. 1.2개요 추가용역의 측량비에 경계측량비가 표기되어있으나 설계공모지침서 7.제공도서에 보면 경계측량 결과를 제공한다 되어있고 과업내용서 3쪽 (7)추가 용역내용에는 현황측량비만 고려되어 있으므로 경계측량은 설계자의 업무 범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니 검토 요 4. 3.2.1)에 “정부규격봉투(발주기관에서 지급)에 사무소명, 응모자명을 기재한 서류를 넣어 봉인한 후 제출도서(설계도면, 설계설명서 등)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바 사무소명, 응모자명을 기재한 서류가 무엇을 말하는지 불분명하니 해당양식 등을 명확히 규정 요. 5. 3.3.1).(8)③항목에 “3차원 이미지 작성시 옥상 등에 신재생에너지(태양광에너지 시설 등), 실외기 등의 설비시설 등을 생략하여 작성하거나 도면 축척을 왜곡되게 표현한 경우는 탈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바 실외기 같은 작은 규격 설비도 표현하라는 것은 과한 것으로 판단되니 삭제검토 요망(조감도에 태양광은 표현하나 실외기 같은 것은 보통 표현 안함.) 6. 3.3.4).(4)⑥항에 “전체 외벽에 대한 창 면적비를 30%미만으로 계획”하라고 되어있는바 창면적비 30%이하는 창면적이 너무 적어 	

보임. 어떤 기준에서 나온 수치인지, 적정한 창 면적인지 검토 요망
(6.5) 등, 기타 과업내용서에도 30%미만으로 기술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 해당 수치 변경시는 동일하게 변경 요망]

7. 4.1.지침위반에서 층수를 초과하여 설계한 경우(9개층이내) 실격
한다고 되어있으나 6.1)항에는 8개층(예 지하2/지상6층, 또는
지하1/지상7층)내로 자유롭게 계획가능하다 되어있고, 과업내용
서에도 이와 같은 취지로 기술되어 있는바 9개층 이내를 9개층
이상 또는 8개층 초과라고 표현함이 맞을 것임

8. 8.1.1).(2)의 국토해양부고시 제2014-345호 “건축설계공모운영
지침”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7-524 “건축설계공모운영지침”
으로 수정 요

9. 8.1.2).(1)의 평가기준에서 공간계획이 평면계획 등으로 매우 중요한
사항이나 배점항목이 20점으로서 작으니 상향 조정의 필요가 있음.
공간계획을 30점으로 상향조정하고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와 기술계획
을 각각 25점으로 하는 등 공간계획 점수 상향 조정방안을 검토 요

10. 10.15)공사비 원가절감 방안청서(서식14)→공사비 원가절감
방안(서식14)으로 오타 수정 요

11. 2.3.공모추진일정 맨마지막 내용에 용역기간이 계약일로부터
210일로 되어있으나, 1.2.10)에 용역기간이 착수후부터 210
일간으로 되어있고, 과업내용서 내용에 따르면 계약일로부터 1
주일이내에 업무 착수하여야 하고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210일로 되어있는바, 계약일로부터 210일을 착수일로부터
210일로 수정 요

《설계공모 공고문》

12. 용역개요(설계규모)

- “.....7개층(예 지하1/지상6층 또는 지하2/지상5층) 내로...”를
“8개층 내로” 또는 “8개층 이내로”수정

《과업 내용서》

13. 1.4.3).(2)에서 업무협의단계를 ...② 기본계획 완료시 ③ 주요 공법 결정 및 기본설계 완료시로 되어있으나 현행 건축 3단계 설계 [계획설계(누계공정20%),중간설계(누계공정50%),실시설계(누계공정100%)]에 맞춰 ② 기본계획 완료시는 계획설계 완료시로, ③ 주요공법 결정 및 기본설계 완료시는 주요공법 결정 및 중간설계 완료시로 수정 요
14. 위와 마찬가지로 6쪽 1.2.9).(1)의 ② 2차 자문회의(기본계획시) :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사항(공정20%),③ 3차 자문회의(실시설계시) : 세부설계 사항 (공정 50%)를 ② 2차 자문회의(계획설계시) : 계획설계 사항(공정20%),③ 3차 자문회의(중간설계시) : 세부(?또는 중간)설계 사항 (공정 50%)으로 수정함이 적합할 것으로 보이니 검토 요
*같은 맥락으로 18,19쪽의 (15),(16)항도 문구 수정 검토 요
15. 22쪽 (10)항에서“ 대지경계측량 및 실측은 정밀측량을 실시하고 부지면적과 정확한 현황을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으로 되어 있는바 과업내용서 3쪽 (7)추가 용역내용에 현황측량만 하는 사항이라 든다, 8쪽 13).(1).②에서 발주기관에서 경계측량 결과서를 제공한다는 내용과 상치되는 사항으로 판단되니 해당문구 적정성 검토 요
16. 22쪽 4). 지반조사 (5공, 탄성파탐사 포함)은 지반조사 (NX 3공, 탄성파탐사 포함)로 수정 요
17. 44-45쪽 11) 환경 설계지침에 보면 실내경기장 조도기준 등이 나오는데 대강당, 체력단련실등이 이런 기준이 적용되는 것인지 11) 환경 설계지침 적용 적정성 검토 요망
18. 과업내용서 하단 쪽수를 매길 때 48쪽 다음에 7쪽부터 다시 시작 하니 수정 요

	19. 5.3.1)성과품 납품시기가 65쪽 66쪽에 서로 상이한 내용으로 중복되어 기술되었는바 65쪽이 맞을 것으로 판단되니 66쪽의 중복사항을 삭제하고, 65쪽의③ 실시설계 최종납품 : 착수일로부터 240일 이내는 착수일로부터 210일 이내로 수정 요	
--	---	--

2018년 7월 일

심의위원 : 박 의 수 (인)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 안전명 : 「시흥5동 복합청사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심의

분야	채 택 의 견	비 고
건축 계획	<p>1. 유니버설한 디자인으로 사용자 모두에게 편리한 복합청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 CONCEPT이 주민들의 편의 및 자유로운 이용을 통한 주민 공동체의 구심체로서의 유니버설한 디자인으로 사용자 모두에게 편리한 복합청사 (예 “복합청사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 개발방향제시” 해서 개발목적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용역범위나 과업내용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 <p>2.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 (Design for All) 구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리적 공간 뿐이 아니라 이용자 모든 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적용을 과업지시서에 배점항목으로 부여해서 설계자가 UD 디자인측면에서 디자인이 되게 할 것. <p>3. 주변에서 접근로 관련 종합적인 접근환경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국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이므로 주변주거지로부터 복합청사로 접근해오는 보행, 자전거, 버스, 자동차와 휠체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 장애인 등 여러형태의 이동수단별과 이동이 불편한분들의 접근환경 조성계획 제시 할 것. <p>4.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설계안이 도출되도록 유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층별 구성부분도 과감하게 설계자가 변경할 수 있도록해서 좀더 개발 CONCEPT에 부합하면서도 혁신적인 구성이 되도록 할 것. <p>5. 중요도가 낮은 과업내용은 과감하게 축소 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중복된 내용이 많습니다, 당선작 선정후 반영할 수 있는내용은 과감하게 삭제, 축소가 필요합니다. 	

	<p>6. 주민편의(체력단련) + 민원 등 + 자치회관의 복합화 대안제시 및 주변환경과의 연계방안을 제시할 것.</p> <p>7. 외장재료의 내화성능이 확보된 재료를 사용할 것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744호 부합하는 난연, 불연, 준불연재료로 설계할 것)</p> <p>8. 일요일 및 근무시간외 청사 개방확대를 고려한 구체적인 보안 및 관리방안을 수립할 것.</p> <p>9. 수유실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장애인화장실의 사용성을 향상하기 위한 개방형가족화장실 (유아,기저귀교환대 등 설치)로 계획할것</p> <p>10. 장애인주차장은 주차 이후에 차로를 횡단하지 않고, 안전하게 장애인 EV에 접근할 수 있는 보행안전통로를 확보 할 것.</p> <p>11.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적용과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본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시설별 접근성향상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도 함께 고려 할 것.</p>	
--	---	--

2018년 7월 일
 심의위원 : 이 상 곤 (인)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 안전명 : 「시흥5동 복합청사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심의

분야	채 택 의 견	비 고
건축 구조	<p>1. “3장 기술지침 3.2 건축분야 설계지침”과 “4장 관련분야 설계지침”을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지 말고 통합하는 것을 검토바람. 모두 건축의 한 분야로 건축계획과 구조,토목,기계설비,전기통신설비,조경분야의 설계지침이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내용이므로 반드시 동일한 장 내에서 연속하여 기술되도록 하기바람.</p> <p>3장 기술지침을 공통지침과 분야별 설계지침으로 구분하고, 분야별 설계지침 내에 건축, 구조, 토목, 기계설비, 전기통신설비, 조경 등 각 분야에 대한 설계지침을 수록하는 것을 검토바람.</p> <p>2. 목차는 과업내용서 내용과 일치되도록 정리하기 바람.</p> <p>1) 과업내용서 [1.6 별도추가업무]가 목차에서 [2.6]항으로 정리됨.</p> <p>2) 과업내용서 [4.5 구조설계지침]이 목차에서 누락됨. 또한 구조계획은 건축계획과의 연관성을 고려하고 구조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항목과 연속해 앞으로 이동 배치하기 바람.</p> <p>3) [5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의 하부항 [5.1,5.2항]을 목차에 포함시켜 정리하기 바람.</p> <p>3. 과업내용서 [1.5 적용기준 및 시방서/ 1)(2)항]에서 명기한 기준들을 최신 기준으로 수정바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 (국토해양부고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11호) ○ 『설계도서 작성 기준』 : (국토해양부 2009-906,2009.9.21.』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25호) 	

<p>건축 구조</p>	<p>4. 지반조사 시 지질조사 작업공수 표기가 과업내용서와 공모지침서에 상이하게 표기됨. 확인 후 정리 필요함</p> <p>1) 공모지침서 1.2 개요 9)설계용역비 - 3공</p> <p>2) 과업내용서 1.3 2)과업의 범위 (7)항 - 3공</p> <p>3) 과업내용서 2.2 4)지반조사 - 5공</p> <p>5. 구조설계에 관한 내용이 [3.2 건축분야 설계지침 3)구조계획]과 [4.5 구조설계지침]에서 중복되어 정리되어 있음. 현재의 3장 내용은 삭제하고 별도의 절, '구조설계지침' 으로 정리하기 바람.</p> <p>6. [5.2 작성 2)구조계산서 (4)항]에서 구조계산서의 각 페이지 우측 상단에 서명란을 만들어 계산의 적정여부를 확인 후 서명토록 하였으나 수백페이지에 달하는 구조계산서 각 페이지에 날인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함. 모든 구조도면은 확인 후 날인이 필요하나 구조계산서는 전체를 확인, 검토한 후 계산서 표지에 작성자, 검토자, 책임자가 날인하는 것으로 수정바람.</p>	
------------------	--	--

2018년 7월 일
 심의위원 : 김 현 아 (인)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 안전명 : 「시흥5동 복합청사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심의

분야	채 택 의 견	비 고
기계 설비	특별한 의견이 없음	

2018년 7월 일

심의위원 : 권 용 일 (서명)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 안전명 : 「시흥5동 복합청사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심의

분야	채 택 의 견	비 고
전기 분야	1. p44 2)기본지침 (11) 전기분야는 다음의 계산서를 작성하여 계산결과를 설계도서와 일치시킨다. - 계산서 추가: 고장전류계산서	

2018년 7월 일

심의위원 : 문 수 철 (서명)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 안전명 : 「시흥5동 복합청사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심의

분야	채 택 의 견	비 고
토질 및 기초분야	<p>1. 25페이지 ㉔세부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항 수정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반에서 암코어(Rock Core)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코아 직경 54mm 이상으로 해야 한다. - 추가) 암반에서 암코어(Rock Core) 채취율을 높이기 위해 double core tube 또는 D-3 core tube을 사용하여야 한다. 로 수정. ○ f)항 수정사항 3번째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고까지 연암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풍화암 5.0m 또는 연암 2.0m까지 시추하는 것으로 하나” 로 수정. ○ b)현장시험 ㉒항 수정사항 2번째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리진 시료는 함수량의 변화가 없도록 밀폐용기 속에 넣어 서늘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로 수정. <p>2. 27페이지 ㉒ 밀도항 수정사항 두 번째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래 및 자갈: 느슨함, 보통, 조밀함.”으로 수정. <p>3. 29페이지 (6) 가시설 설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㉑ 번항 수정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구간의 주변 건물 및 지장물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채택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로 수정. ○ ㉒ 번항 수정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시설 토류벽의 굴착 및 해체단계별 구조해석은 탄소성 해석법에 따른다”로 수정. 	

2018년 7월 일

심의위원 : 이 규 응 (서명)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 안전명 : 「시흥5동 복합청사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심의

분야	채 택 의 견	비 고
조경분야	<p>설계공모지침서내용 수정 및 보완</p> <p>1. 2.4 설계 공모 참가자의 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공모 당선자는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관계규정에 의한 설계업 면허가 없을 경우 해당 설계업 면허 자격을 가진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계약할 수 있음” 으로 되어 있어, <p>조경설계업면허에 관한 조항이 없는바, 해당 청사의 조경공사 규모 등을 감안하여 조경설계업면허에 조항 추가여부를 검토 하기 바랍니다.</p> <p>2. 8.1 설계공모지침서 평가기준 수정(2)위원회평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항목 :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중 세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 조경계획의 적정성과 주변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p>(※사유 : 조경계획에 대한 평가기준 명시)</p>	

2018년 7월 일

심의위원 : 조 의 섭 (서명)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 안건명 : 「시흥5동 복합청사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심의

분야	채 택 의 견	비고				
건축 분야	<p>【설계공모 지침서】</p> <p>1. 3.3. 제출도서의 작성 -> 2) 설계도판에 아래의 사항을 추가할 것 (8p)</p> <p>○ 작품 심사시 게시되는 도판의 조합은 다음과 같다.(예시임) 배치안은 각 응모자의 창의력에 의한 표현으로 조정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auto; width: fit-content;">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도판 1 설계설명서 배치도 </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도판 2 평면도 </td> </tr> <tr>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도판 3 입면도(2면) 주단면도 </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도판 4 동선계획 및 이미지 표현 </td> </tr> </table> </div> <p>○ 도판 1 : 설계설명서 작성, 배치도작성</p> <p style="margin-left: 20px;">① 설계설명서 : 건물, 마감, 설비, 주차, 조경, 개요 등을 작성하고 설계안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신공법, 신소재에 대한 사항을 표기</p> <p style="margin-left: 20px;">② 배치도 : 시설배치, 도로, 녹지 및 부대시설(주차장)배치 계획 및 이격거리에 대한 사항 등을 작성하고 지하 구조물은 점선으로 표기한다.</p> <p>○ 도판 2 : 평면도 - 각층별로 작성</p> <p style="margin-left: 20px;">- 지상 1층 평면도의 경우 대상지 내외의 상황을 함께 표현</p>	도판 1 설계설명서 배치도	도판 2 평면도	도판 3 입면도(2면) 주단면도	도판 4 동선계획 및 이미지 표현	
도판 1 설계설명서 배치도	도판 2 평면도					
도판 3 입면도(2면) 주단면도	도판 4 동선계획 및 이미지 표현					

분야	채 택 의 견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건축 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판 3 : 입면도 2면 (축척 : 임의) 주단면도 (축척 : 임의) ○ 도판 4 : 동선계획 및 이미지 표현 (축척 : 임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동선계획도 - 이용자 출입동선 및 조경계획을 표시 ② 주차계획도 - 전체주차 개념 및 진입동선을 표시 ○ 기타 지침서에서 요구한 표현을 만족하고도 여백이 발생할 시는 응모자가 임의로 표현가능 <p>【 과업내용서 】</p> <p>2. 1.4 일반사항 -> 1)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에 아래의 항목을 추가할 것(3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 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 증명서 - 외국기술자인 경우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에 해당 용역의 정보를 입력한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전산파일)를 발주 기관에 제출한다 <p>3. 2.1 공통사항 -> 3) 발주기관,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 (9) 보안에 아래의 항목을 추가할 것(16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 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 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 보안관리의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분야	채택의견	비고												
건축 분야	<p>4. 3. 기설지침 -> 6) 교통동선계획 지침 -> (2) 시설별계획 지침에 아래의 항목을 추가할 것(37p)</p> <p>○ 주차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방문자용의 주차장은 부지의 이용을 극대화하고, 적절히 넓게 한다. 특히, 민원 관련 업무실은 공공 교통기관의 이용에 불편치 않도록 충분히 고려한다. - 필요시, 장애자의 주차 공간은 출입구 부근에 계획한다. - 넓은 주차장은 적극적으로 녹화(綠化)를 고려한다. <table border="1" data-bbox="443 786 1225 936"> <thead> <tr> <th>시 설</th> <th>면 적</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직 원 용</td> <td></td> <td></td> </tr> <tr> <td>방 문 자 용</td> <td></td> <td></td> </tr> <tr> <td>기 타</td> <td></td> <td></td> </tr> </tbody> </table>	시 설	면 적	비 고	직 원 용			방 문 자 용			기 타			
	시 설	면 적	비 고											
직 원 용														
방 문 자 용														
기 타														
<p>5. 2. 일반지침 -> 2.1 공통사항에 아래의 항목을 추가할 것</p> <p>○ 통합사업관리정보시스템(One-PMIS) 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의 종합관리능력을 제고하고 의사결정의 신속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계용역시 발생하는 각종 문서, 내역서, 도면, 기술 자료 등을 표준분류체계에 의해 작성하고 사업정보를 One-PMIS를 활용하여 처리를 해야 하며 세부적인 이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p>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시에 세부적인 통합사업관리정보시스템(One-PMIS) 수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되, 사전에 One-PMIS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시 표준분류체계를 준수하여 One-PMIS 적용요령 (통합사업관리정보시스템→커뮤니티→One-PMIS 자료실)에 따라 관련 내역서 및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One-PMIS를 통해 준공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One-PMIS를 통하여 처리되어야 할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착수에 관한 사항 b. 공정(주간, 월간 업무보고, 부진사유 및 만회대책)에 관한 사항 c. 설계변경 등에 관한 사항 d. 기성처리에 관한 사항 e. 준공(표준분류체계에 의한 준공산출물 등)에 관한 사항 f. 계약상대자의 공문서 및 보고서의 접수 및 발송에 관한 사항 g. 기타 One-PMIS에 설계용역사 사용 기능에 있는 사항 														

분야	채 택 의 견	비고
건축 분야	<p>6. 구조계획에 대한 아래의 내용을 추가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시 「건설기술심의 도서작성 기준에 의한 공공건축물 내진성능 강화 방안(기술심사담당관-16466, `17.9.21)」을 반영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공공건축물 내진성능 강화방안에 따른 내진설계 - 건축구조기술사의 건축물 (내진)설계도서 Checklist 작성 -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에 확인/날인 - 철근콘크리트 내진설계 배근상세도 참조 <p>7. 안내표지시설의 건축물 내부 및 실명 안내사인물 계획을 추가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지 체계(Signage)는 일반인과, 장애인용, 실내와 실외로 구분하고, 기본설계 시 디자인(채색시안)안 제출 및 설치 위치를 계획하여 검토 받도록 할 것 <p>8. 서울시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게실, 탈의실, 샤워실, 세탁실을 복합적(일체형)으로 구성 ○ 청소근로자만의 전용 휴게공간 확보, 남녀 고용규모 등에 따라 구분 설치 ○ 1인당 5㎡ 내외의 공간 확보(휴게실은 바닥난방 필수) ○ 기자재 및 청소도구 보관 수납공간은 별도 확보 ○ 사무근로자와 동선이 혼재되지 않도록 하고, 작업공간 인접배치 고려 <p>9. 유지관리 부서와 발주부서, 설계자는 설계단계부터 준공시까지 T/F 팀을 구성 · 운영하여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하도록 할 것.</p>	
기계 분야	<p>10. ‘기계설비 설계지침 5) 오수정화설비’ 아래내용을 추가할 것.(p3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인조 이상 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를 설치할 경우 공기공급 장치 등 악취저감장치 설비를 갖추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p>11. 과업내용서에 아래 사항을 추가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내역에 근로자 편의시설(식당, 휴게실 등)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분야	채 택 의 견	비고
기계 분야	<p>12. 기타 아래내용을 수정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안전행정부 → 행정안전부 ○ 국토해양부 → 국토교통부 ○ 설계도서 작성 기준(국토해양부 2009-906, 2009.9.21.) →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25호, 2016.12.30.) 	
전기 분야	<p>13. “4.3 전기, 통신설비 설계지침”에 다음 사항을 추가할 것.</p> <p>2) 기본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 “전기분야는 다음의 계산서를 작성하여 계산결과를 설계도서와 일치 시킨다.”에 다음 사항을 추가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케이블트레이 용량계산서 (1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은 가능한 관급자재에 반영하여야 한다. <p>14. “3) 특고압수변전설비, 예비전원설비 및 간선설비”에 다음사항을 추가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실, 발전기실에 설치되는 수배전반, 발전기 등 중량물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장비 반입구를 계획하고 설계도서에 반영한다. <p>15. “9) 통신설비”설계지침에 다음 사항을 추가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 통신선로에 침입하는 뇌 서지에 대비하여 적정 피뢰설비를 계획한다. 	
토목 분야	<p>16. ‘(4) 보도 설계’(p24)시에는 『도로 연석(보차도경계석) 품질향상 방안』 (보도환경개선과-4328, `18.4.11.)에 따라 설계 및 시공관리 개선 등 해당 내용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보완할 것</p>	

분야	채 택 의 견	비고
토목 분야	<p>17. '3) 업무협약 및 공정보고'(p5)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을 추가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 계약상대자는 공정보고서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② 각종 도서 수발 현황(승인사항 포함) ③ 과업수행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④ 참여기술자 현황(작업일지 및 투입일수 포함) ⑤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p>18. 「시설물 내진관련 건설기술심의 내실화 방안, 기술심사 담당관-10025('16.6.7)」에 따라 내진설계 자료 요약서를 설계보고서에 수록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서의 (p60) '5. 성과품 작성 및 납품, 5.1 일반사항'에 해당 내용을 보완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보고서, 구조계산서, 지반보고서 등에 산재되어 있는 내진설계 자료를 요약하여 설계보고서에 수록할 것 <p>19 '서울시 공사장 지하수관리 매뉴얼'(물순환정책과, '17.5.)에 따라 대상사업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내역서 작성시 굴착공사에 따른 공사장 및 주변 계측 등 안전관리를 위한 관리비용 추가를 검토하고, 시방서에는 '공사장 지하수 관리 매뉴얼' 준수를 명시할 것</p> <p>20. '2) 신기술의 도입'(p32)에는 다음 내용을 보완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 신기술 등 특정공법 적용시에는 자체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법을 선정하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나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 (4) 신기술 등 특정공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목록표 작성과 해당도면에 공법 명칭(지정번호 포함)을 명기하여야 한다. ○ (5) 공법 선정시 관련 신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유사 또는 기존 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때는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발주기관의 자체공법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사유를 시장이 정한 양식에 따라 설계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p>토목 분야</p>	<p>21. 용어의 정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독관 → 용역감독자 ○ 발주처 → 발주기관 	
<p>조경 분야</p>	<p>22. 조경설계 기본지침 (16)옥상조경 관련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할 것 (p.5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옥상녹화시스템 설계 및 설계도서 작성지침(2013. 5)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옥상녹화가이드라인(2017.12)』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p>23. (4)포장설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할 것(p.5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책로 등 포장지역은 전 구간에 걸쳐 연속성, 통일성을 줄 수 있게 계획한다. <p>24. (5)시설물설계에 대한 항목에 아래 내용을 추가 할 것(p.5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경시설물은 옥외에 설치되는 점을 감안하여 습기, 광선 등에 대한 내구성, 구조안정성, 이용자 안전, 미관, 유지관리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벤치, 등 의자, 파고라, 음수대 등은 방문객 이용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위치를 고려한다. <p>25. (6)옥상조경 관련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할 것(p.5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심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의 「식재기반조성공사(SMCS 34 30 10 :2018)의 조성기준을 따른다. 	

2018년 7월 일
 심의위원 : 김홍길 (서명)